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구미의 미래 발전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행력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배후 신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오며 개방형 융·복합 연구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

- 필요성 :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공항 연계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구미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 있는 핵심사업 발굴 추진으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사무 전반
 - 연구과제 발굴 및 관련 전문가 그룹(산·학·연) 구성
 - 연구주제별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등 연구활동
 - 구미시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자문,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 공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시정 활용 방안 모색
-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 위탁기간 : 2026. 3. ~ 2026. 12.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120	18	90	12	

-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 1. 29.)
-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 부서의견 : 공항경제권 지역맞춤형 전략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를 대비하여 구미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포럼 운영은 단순 행사 대행이 아닌 전문적인 정책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인 사무로, 30년 이상의 정책 연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재)경북연구원(90.12.21.설립)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기관을 통한 위탁사업이 지난 3년간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37개의 과제를 도출하는 운영실적을 기록하고, 24년에는 연계 사업화 방안을 위한 실무부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도 인정됨.
- 또한 비용추계상 1억2천만원 중 연구활동에 투입되는 직접비 비중이 75%(90백만원)에 달하고, 간접비는 10%(12백만원)로 제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5년도 성과평가가 조례 시행 시기 문제로 미시행되었고 해당 사업이 1회성이 아닌 매년 실시되는 계속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완료 후에는 구체적인 정책 반영 실적 등 정량적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도출된 연구과제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및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